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7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법 제13조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등 각종 농어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공사법」 제44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3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동 특례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음.

이만희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각종 농어업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조성농지의 처분 특례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어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으며 조세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